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2048657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김다하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피고,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2. 주식회사 D

피고, 부대피항소인 3.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영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조장혁, 강선주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5가합55790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44,825,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소외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각 해당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식매수대금청구¹⁾

피고 B은 원고에게 4,244,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2017.

11.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부당이득반환청구²⁾

1) 이 부분 청구취지는 부대항소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제1심에서 이 부분 청구가 전부 기각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307,828,24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17,372,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2017. 11.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퇴직금지급 관련청구³⁾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534,415,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8. 11. 23.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521,346,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83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각 이 사건 2018. 6.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피고 B,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 중 주식매수대금청구 및 퇴직금지급 관련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이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고 이 판결 주문에 관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전체를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주문 부분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함께 기재한다).

3) 원고는 2018. 11. 23.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에 관한 기존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1예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취지 중 주식매수대금청구 및 퇴직금지급 관련청구 부분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배정한 후"를 "배정한 후, 각 주권을 발행·교부하고"로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하8행의 "원고가 ~ 근접한" 부분을 삭제하고, 하4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에 따른 계산 결과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를 한 당시 (2015. 2. 16. 무렵)의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하3행부터 9쪽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하6행 ~ 하3행의 "할 것인데, 원고는 ~ 보더라도" 부분을 "할 것인데(추가 요건 없이 '원고의 퇴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협약 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퇴임 시에는 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의 문구가 협약 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염두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원고는 2004. 3. 2.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기 전인 2011. 7. 6.부터 이미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협의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원고의 퇴임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이라고 해석하여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C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12. 7. 1.을 기준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쪽 1행 ~ 9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3쪽 하8행부터 하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피고 D의 주식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은 당

초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대상으로 체결된 것인데, 주식회사 F이 상호를 변경한 피고 C가 일부 분할되어 소방시설점검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D이 설립된 점, ② 이 사건 협약에서 제5항을 두어 주식회사 F 내의 점검사업부를 법인으로 분리하여 관계회사를 신규 설립할 것임을 정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 B은 위 협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회사분할 및 피고 D의 신설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약 제1항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 비상장회사이고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D 또한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의 주식 또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협약의 내용과 목적 및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쪽 11행부터 15쪽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식 양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위 의무의 이행방법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권은 상법 제356조에 정한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 2766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효한 주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C의 보통주 25,000주에 관한 구 주권, 즉 1992년경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교부받은 보통주 5,000주에 관한 주권(별지 1. 목록의 순번 제3항)이 유일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 D 및 피고 C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신규로 발행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 해당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권이 유효하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의 순번 제 1, 2항 기재 주식의 주권인 같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라고 한다)과 위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8. 8. 22.경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함으로써 반대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22.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물제13호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주식명의개서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4, 36호증, 을 제19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3655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권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및 공탁물회수청구권 압류를 신청하여 2019. 4. 12. 압류 및 인도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2019. 4. 25. 위 주권을 회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주권에 관한 원고의 공탁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에 관한 공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44,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6쪽 하5행 ~ 하4행의 "별지 1. ~ 서류를" 부분을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로 고쳐 쓴다.

3. 퇴직급여 지급 요청 통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D은 퇴직급여제도로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원고 앞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2. 31. 피고 D에서 퇴직하여 위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E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E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1예비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무하던 피고 D에 대하여 퇴직금 534,415,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퇴직금 521,346,563원과 피고 D에 대하여 퇴직금 830,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⁴⁾

2) 피고 D 및 피고 C

원고는 E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고, E이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퇴직급여 지급 요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E 내부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하여 E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4) 제1예비적 청구는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것이다.

지급을 요청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피고 D 및 피고 C는 퇴직급여제도로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E에 원고 앞으로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에 관한 의무를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 D 및 피고 C에 대하여 재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로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며(제2조 제6호, 제20조), 위 과정에서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할 책무가 있다(제32조).

2)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퇴직급여제도로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E을 지정하여 2013. 8. 20. 피고 D의 임원(고문)이었던 원고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후, 원고가 피고 D에서 퇴직한 2013. 12. 31.까지 위 계정에 부담금 합계 534,415,594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 D에서 퇴직하고 위 퇴직을 사유로 2014. 3. 24. 피고 D에게, E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D 재직 중 아들인 J을 위장 취업시킴으로써 발생시킨 조세탈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지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및 2018. 12. 27. E을 상대로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은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 D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으면 이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 D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1조(급여의 지급사유)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0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과 제도의 운영 중단으로 한다.

제22조(급여의 지급절차)

- ① 사용자는 제21조에서 정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가입자로부터 급여의 청구를 받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청구를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하게 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이 사업의 소멸 등 사용자를 통한 급여청구가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급여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E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의무는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임원 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 등 E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써 이행될 수 있다.

가) 앞서 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 D은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할 책무가 있고, 피고 D의 퇴직연금규약 제22조에 따르면 피고 D은 원고와 같은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인 E에 위 급여 청구를 전달하고, 지급을 지시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3. 12. 31. 피고 D에서 퇴직하고 2014. 3. 24. 피고 D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E에 원고의 급여 청구를 전달하고, 지급을 지시하며, E이 요구하는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연금 적립률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E이 2019. 1. 28. 원고에게 회신한 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이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피고 D이 작성한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부의 업무처리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에 따라 원고와 같은 임원의 퇴직소득의 경우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달리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E이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피고 D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D의 퇴직연금규약은 제22조 제4항에서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언 및 위 나)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 D의 사업 소멸 등으로 인하여 피고 D을 통한 급여청

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에게 사업 소멸 등에 준하여 E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4) 따라서 피고 D은 E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는바, 그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성충용

판사

최현종

별지 1. 주식의 표시

주 식 목 록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 C 주식회사 주식

- (1) 주식의 종류: 보통주
- (2) 1주의 액면가: 5,000원
- (3) 주식의 수량: 25,00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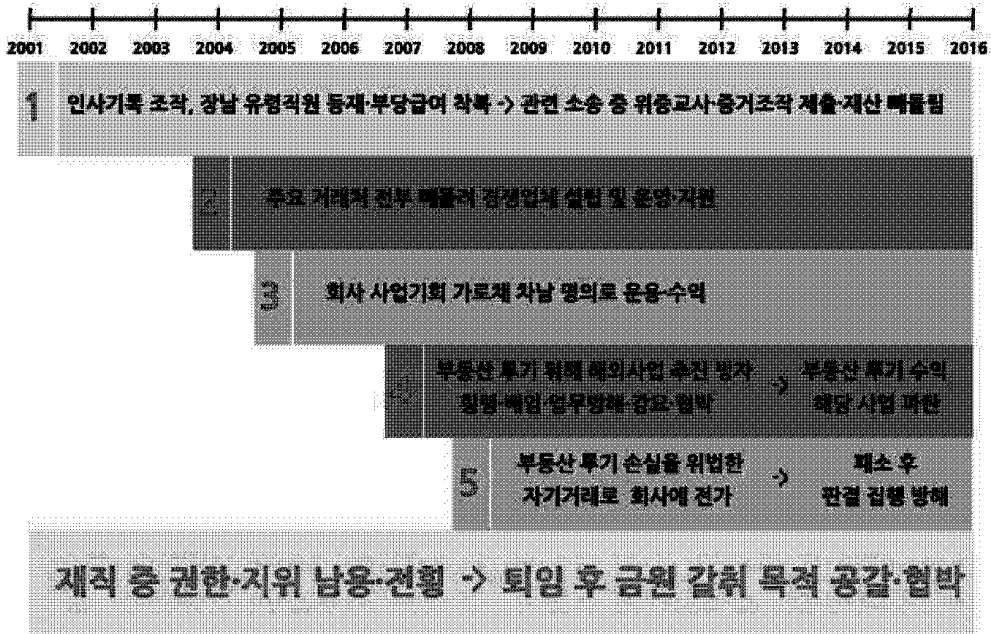
2. 주식회사 D 주식

- (1) 주식의 종류: 보통주
- (2) 1주의 액면가: 5,000원
- (3) 주식의 수량: 25,000주

3. 다만, 실물로 발행·교부되어 효력이 발생한 주권은 주식회사 F의 500주권 9장 및 100주권 5장임. 끝.

별지 2.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의 표시

〈 원고의 전형 및 배임·배신행위 개요 〉



끝.